

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 
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(제19조 관련)

| 교육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시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.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<br>2.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의 및 수산질병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| 공통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시간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교육<br>(수의·수산질병관리 임상, 방역 및 검역, 보유동물 건강관리 등)      | 4시간  |
| 3.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육사<br>4.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사육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| 공통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시간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교육<br>(행동풍부화, 긍정강화, 안전관리, 서식환경 및 영양 관리, 동물복지 등) | 4시간  |
|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외에 영 제19조제2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         | 공통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시간  |

비고

1. 공통교육은 방역 및 공중위생, 재난·안전 관리, 사고 예방, 동물복지, 동물별 생태습성, 수질 및 생명유지장치(LSS) 운영 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 임직원들이 공통으로 알아야 하는 기초 소양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.
2. 교육대상자는 공통교육의 경우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또는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의 구분 없이 두 교육기관 모두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, 전문교육의 경우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에서,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.
3. 공통교육 및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.